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중국난좌 국내시장 위협한다 생산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난좌의 국내 수입이 검토되었고, 이제는 중국난좌 수입이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오래지 않아 국내 난좌회사들의 경영난 악화로 국내 생산이 줄어들고 중국의 난좌수입업체들의 단합에 의해 오히려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난좌를 써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30개들이 난좌는 1달에 약 2,500만장 정도가 소비(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중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난좌는 500만장 정도로 국내 시장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중국 난좌가 수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2003년 12월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기인할 수 있다. HPA발생 이후 1년 반동안 높게 유지된 난가로 인해 사육농가수 및 사육수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난 2005년 9월 5,500만수라는 사상 최고의 사육수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곧 계란을 유통시키는데 필수적인 난좌의 사용량 증가를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난좌회사들이 24시간을 난좌생산에 매달려도 채란인들이 원하는 난좌를 공급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수입업체들이 난좌수입을 모색했고, 금년 초부터 수입이 이루어졌다. 당시 도착가격은 장당 65원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던 75~80원보다 낮게 수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난좌의 질이 국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패하는 듯 보였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수입을 재개하면서 최근 70원 내외로 형성되는 국내 난좌와 경쟁을 하고 있다. 국내 난좌업체들이 수입을 막기위해 가격을 낮추어 공급하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수만은 없다는게 난좌회사들의 중론이다. 출혈 생산은 결국 난좌회사의 도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난좌는 부피가 크고 중국 내륙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수송비용을 감안하면 최소 장당 40원정도가 들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는 현지 생산비가 최소 35원이하를 기록해야 국내 난좌회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으며 중국도 인건비가 오르고 난좌의 재료인 신문지 가격 역시 만만치 않아 이를 맞추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싼 가격에 장기간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시장 잠식은 피할 수 없으며, 수입량을 주

도하는 수입업자들에 의해 수입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 국내 제품가격이 높을 경우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지만 수입품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만약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변수가 발생할 경우 매일 생산되어지는 계란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다. 국내 난자생산업체들이 사라진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즉,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이 장래 양계산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축사기반시설부담금 신설 논란 축사는 예외규정 둘 수 있도록

최근 축산업계의 대과제로는 한미FTA, 도축세, 농지법, 축산물가공업무, 축산분뇨 등이 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축사기반시설부담금이 현안문제로 대두되면서 축산농가들의 또 다른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 이후 재건축이나 증축 등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60평(약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 신축하는 양계장 및 부대시설의 경우 1개동의 계산만 하더라도 15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양계시설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분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축산시설을 단순 개발 건축물로 간주하여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축산현장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농림부 및 건설교통부에 축산분야를 예외규정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축산인들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학교,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수혜자부담원칙을 일정부분 적용,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방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대단위 주택단지나 공장처럼 기반시설 유발효과가 없는 축사용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부담금부과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은 60평이상 건축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는 모두가 부과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축사(양계장)를 지을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지역이나 해당건축부지의 지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사례가 없는 한 실제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산출방법을 살펴 보면 대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15~25%)에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은 6만원이며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평균)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현재 도시외곽지역 공시지가 5만원/㎡의 부지에 1,000㎡(약 300평) 규모의 양계장을 신축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960~1,600만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된다. 축사 및 가축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축산정책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이다. 일부에서는 축사기 반시설부담금이 사육규모를 제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부담금 부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축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바란다.

미국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교훈 양계질병 예방에 더욱 관심을...

국내 주요가금질병 발생사를 보면 국내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양계농가를 괴롭히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양계 초창기인 1960년대만 하더라도 콕시듐, 가금콜레라, 계두, 뉴캐슬병, 추백리 등 5가지 정도의 질병만 잠재울 수 있으면 양계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닭뉴모바이러스 등 30여종의 질병이 농장에서 발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콕시듐, 뉴캐슬, 추백리 등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질병들중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도 있지만 수입개방 및 수의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농장 질병 사례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 미시건주의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가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계업계에서는 무척 다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금년 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금년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결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비록 최근의 아시아형 H5N1이 아니고 별다른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도 유전자 해석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것이 아니므로 조만간 최종 확인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A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에서는 아직 미국으로부터의 검역을 장정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 조치에 대해 지켜봐야하지만 미국에서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인 무역흐름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 물론 가금육의 수입이 금지되게 되고 물론 종계 및 원종계의 수입 또한 중지되면서 국내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료곡물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곡물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모든 질병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3월 20일 경기도 양주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발생 이후 아직까지 국내발생은 없다. 모든 양계인들도 질병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신속한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어느 질병이 발생되더라도 퇴치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고 있지만 전 양계인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양계**